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6-26
----------	-------

2026. 3. 13.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차해영 의원 외 7인
- 나. 제 안 일 : 2026. 2. 27.
- 다. 회 부 일 : 2026. 3. 5.

2. 제안이유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절약 및 폐기물 감량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제안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5조)
- 다. 수리 문화 확산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안 제6조)
- 라.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2) 「소비자기본법」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4) 「제조물책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6. 2. 23. ~ 2026. 2. 27.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탄소중립 실천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대량 생산·소비·폐기 위주의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환경적·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수리할 권리를 조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조 ~ 제2조(목적 및 정의)는 「소비자기본법」 및 「순환경제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의 범위를 규정함.
- 안 제3조(책무)는 구청장에게 시책 마련의 의무를 부과하고 구민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

- 안 제6조(지원사업)는 현실적 측면의 무상 공구 대여 및 수리 전문가 양성으로 실질적인 수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재정적 측면을 보면 지원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1항),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과 집행의 효율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수리활동지원단)는 전문 인력을 통한 자문 및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경기도 사례와 유사하게 실무 중심의 조직 구성이 기대됨. 다만, 기존의 ‘우리동네 맥가이버’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쳐 쓰는 생활양식’을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하려는 선제적 입법으로 평가됨. 특히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를 자치법규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리 행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¹⁾에 따르면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제조물을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가공’한 자 역시 제조업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수리 과정에서 제품의 본질적 구조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변경 또는 가공 (Modification)이 이루어질 경우,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제조사가 아닌 수리 주체(구 또는 사업 수행 단체)가 제조업자로 간주되어 무과실 책임의 법적 주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제정안의 정책적 의의를 살리면서도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수리 대상 품목을 안전사고 위험이 낮은 ‘단순 생활용품’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수리 참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리 완료 이후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수 절차를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근거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 구조의 변화 및 원제조사의 보증(AS) 효력 상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 역시 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공산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2. 그 밖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②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호: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게 보유
2. 법 제20조제2호: 사전에 예비부품의 배송일자를 제품을 수리하려는 자에게 알리고, 그 배송일자 이내에 배송 완료
3. 제3항제1호: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의 수입
4. 제3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수리하려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 가.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 나.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 다.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다음의 정보
 - 1)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보
 - 2)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수리의 용이성 제고
2.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